

선	기관의 장
람	

제1445호

2026년 9월 21일(월)

- 차 례 -

조 례

제2986호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1
제298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1
제2988호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	- 26
제2989호	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32
제2990호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37
제2991호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42
제2992호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47

조 례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가.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재단 임무 정비 및 소집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7조 ~ 제8조)

나.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제9조)

다.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신설(제12조)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1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6호

붙임: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6호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가입자격) ① 강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단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가입자격과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면 자율방재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④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원 중 1명을 읍·면 부대표로 지명하고, 지명된 읍·면 부대표는 읍·면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와 방재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단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2.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경보 전달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해복구 지원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은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읍·면 대표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정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수 경비(운임, 식비, 일비, 유류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단위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위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0조(출입증)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

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재해보상) ①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할 수 있다.

1. 요양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

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유족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자필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지명·선출된 단장, 단원,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 등은 이 조례에 의

해 각각 임명·위촉·지명·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강화군 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남 / 여	연령		혈액형	
주 소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년 ○○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활 동 희망내용					
[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 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강화군 자율방재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강화군 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보유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활 동 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 명부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강화군 자율방재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활동 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도보, 차량, ○개조 교대 등 활동 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 ○○분)			
	장 소	※ ○○읍·면 일원, 도로명 주소, 지번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 유도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확인자 : ○○○읍(면) 대표 성 명 (인)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강화군 자율방재단장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연번	성명	활동상황		특이사항
			횟수	시간	
	1				
	2				
	3				
	⋮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강 화 군 수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강화군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시기, 활동 개요, 행사 개요 등을 월별로 작성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강 화 군 수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cm)
강화군 자율방재단

← 5.5cm →

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남/여)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 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강화군수 (직인)
바탕 배경에 강화군 상징(휘장) 삽입

↑
7.7
c
m
↓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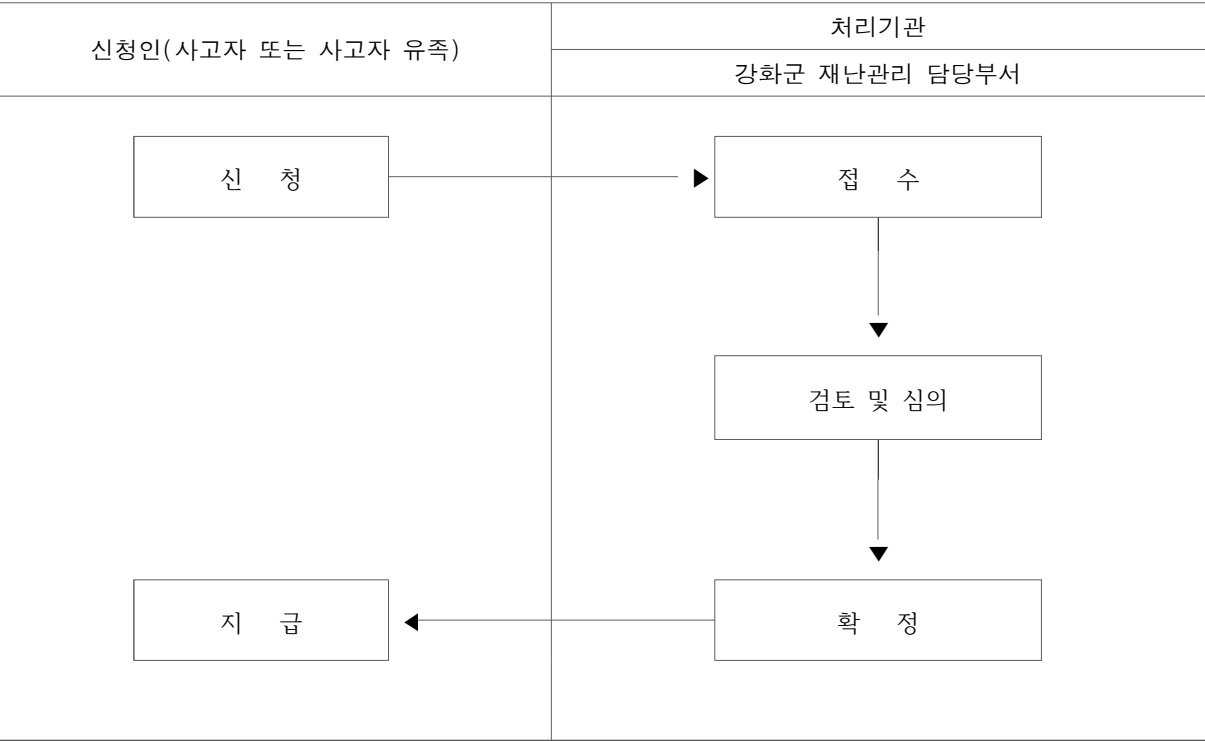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 개정이유

가. 정부 조직 개편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 조문 정비
(제1조 ~ 제10조)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 정비
(제11조)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서 의결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1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7호

붙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5조(「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6조(「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0조(「강화군 건축 조례」의 개정)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를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를」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경비”를 “사용료”로 하고, 후단의 “경비”를 “사용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이 조례는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습멘토링(에듀테크 멘토단)을 통해 도서·농촌 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관내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조	표제	주요내용
제1조	목적	AI·에듀테크 활용 멘토링으로 교육격차 취약지역 포함 관내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제2조	정의	에듀테크, 미래인재, 에듀테크 멘토단, 교육격차 취약지역, 학교 등 5개 용어 정의
제3조	책무	군수의 종합시책 마련, 취약지역 우선지원, 매년 접근성 실태조사 의무(①②③ 모두 강행규정)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타 조례에 특별 규정 없는 한 이 조례 적용 (일반법-특별법 관계 정리)
제5조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최초계획 수립, 6개 필수 포함사항 규정
제6조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범위 내 5개 호 사업 예산지원(임의규정), 매년 공고
제7조	멘토단 구성·운영	청년·대학생·은퇴교육자 등으로 멘토단 구성(임의규정), 취약지역 우선배치, 수당·장학금은 규칙 위임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학교·에듀테크 기업·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제9조	시상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 공로자 포상
제10조	시행규칙	멘토단 구성·운영·수당 지급기준 등 규칙 위임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1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8호

붙임: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8호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EduTech)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멘토단의 학습멘토링을 통해 도서·농촌 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강화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며, 교육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 등을 교육에 융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미래인재”란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에듀테크 멘토단”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어 학생에 대한 학습멘토링, 디지털기기 활용 지도 및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는 인력집단을 말한다.
4. “교육격차 취약지역”이란 도서지역,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 정보통신 인프라 및 교육자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말한다.

5. “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격차 취약지역에 에듀테크 멘토단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디지털 기기·인프라를 우선 지원하는 등 도서·농촌 지역 등의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교육격차 취약지역의 에듀테크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화군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에듀테크 기반 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방안
3.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청, 학교, 민간 기업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 취약지역 우선지원 계획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 지원
2.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기기 지원
3. 방과 후 학교, 돌봄 취약계층 대상 에듀테크 활용 학습 지도 및 보충 교육 사업
4. 소프트웨어(SW)·코딩, 데이터 리터러시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대상, 선정기준 등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듀테크 멘토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 대학생, 은퇴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이하 “멘토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멘토단은 학생에 대한 학습멘토링, 디지털기기 활용 지도, 진로상담 및 정보 접근성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멘토단을 배치하는 경우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④ 군수는 멘토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또는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멘토단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위촉이 제한되는 사람은 멘토단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국내 유수의 에듀테크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상) 군수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멘토단의 구성·운영 및 수당 지급기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제3조)

다. 군민의 협력 및 계획 수립(제4조 ~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교육(제6조 ~ 제7조)

마. 홍보 및 포상(제8조 ~ 제9조)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의결된 「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6년 9월 21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9호

붙임: 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9호

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관련자를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강화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의 단체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제3조 ~ 제4조)

다.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제7조 ~ 제8조)

마. 홍보 및 포상(제9조 ~ 제10조)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1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90호

붙임: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90호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여성고용사업장”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여성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군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군 소재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및 경력보유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2. 제정이유

가.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제3조 ~ 제4조)

다. 소유자 등의 의무 및 기본계획 수립(제5조 ~ 제6조)

라. 구조·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 조성(제7조 ~ 제9조)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의결된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1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91호

붙임: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91호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 입법권 확대와 행정 수요에 맞춰 입법 자문 및 쟁송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의정활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근거 마련과 의회 소관 적용 범위 명시(제1~2조)

나. 변호사 2명 이내 위촉 인원 및 임기 2년 명시(제3~4조)

다.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법령·자치법규 해석, 소송 수행의 직무 및 비밀·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조항 명시(제5조)

라. 강화군의 고문변호사 겸직 금지 및 의회와 이해충돌 사건의 상대방 대리 및 자문 금지 조항 명시(제6조)

마. 자문방법 명시(제8조)

바. 자문료 및 소송비용 조항 명시(제9조)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의결된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1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92호

붙임: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92호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위촉) ① 강화군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경력, 전문성 및 법률사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2명 이내로 둔다.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및 비밀유지)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사무를 수행한다.

1. 의회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

2.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관련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적용
 3.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수행 및 법률자문
 4. 그 밖에 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사항
- ② 고문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자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4. 변호사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5.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자문방법 등) ①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